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330
----------	-----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8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박춘희, 김성기, 이창열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의 진로개발이나 취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관내 사용 바우처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육성하고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방법(안 제3조~제4조 관련)
- 신청주체 및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시기(안 제5조~제8조 관련)
- 지원정지 및 환수,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9조~제10조 관련)
- 가맹점 지정(안 제11조 관련)
- 가맹점 준수사항 및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안 제12조~제13조 관련)
-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관련(안 제18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 2024. 9. 19. ~ 10. 8.(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4. 9. 6. ~ 9. 13. 아래표 참조.

조례안(원안)	집행부 의견(인재육성과)	검토 결과
<p>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지원은 지원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p>	<p>제3조에 대한 의견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지원은 지원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u>이 외의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u></p> <p>(사유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이며, 본 조례와 지원대상이 유사한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소득수준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필요’ 의견이 있어 재협의 절차에 있으며 본 조례에 따른 신설 협의 시 유사한 의견이 예상되는바,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근거 필요.</p>	<p>(수용) 다만, 제안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인 ‘군수가 정한다’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추상성에 대한 군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반영 함.</p> <p>제시한 ‘이 외의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u>‘소득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u>로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는 <u>‘그 밖에 필요한 서류,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u>로 함</p>
<p>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u>연 24만원</u>이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p>	<p>제4조에 대한 의견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u>예산의 범위 내에서</u>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p> <p>(사유 -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된</p>	<p>또한, 안 제4조 지원금액과 관련한 ‘예산의 범위’는 ‘<u>연 최대 24만원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u>’로 변경하여 반영함.</p>

	<p>법률안 또는 조례안의 경우 그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이며, 군의 재정적 부담 또는 지원금 증액 수요 등의 사유로 지원금 조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p>	
<p>제6조(지원신청)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 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복지시설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p>제6조에 대한 의견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 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복지시설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5. <u>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u>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우처”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평창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지원은 지원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소득기준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연 최대 24만원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지원신청)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복지시설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5. 그 밖에 필요시,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7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지원시기)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1회 지원한다.

제9조(지원 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0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가맹점 지정 등) ①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평창군 내로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
 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가맹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군수는 가맹점을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바우처 사업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6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7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 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지원 대상자 (청소년)	성 명	주민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 × × × ×
	주 소	전화번호	
	관 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 부[] 모[] 그 외[]	
※ 1.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음.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동의란	성 명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 × × × ×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비 고	수수료 없 음
-----	------------

평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청소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복지시설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발급 및 관리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자료, 법정대리인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발급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사용기간은 발급 연도의 12월 20일까지이며, 남은 포인트는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는 서명란에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시 해당 카드의 사용이 중지되거나 향후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인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관은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은 카드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변경 해지 신청서

1. 가맹점 정보

상 호		업종 및 취급품목	
대표자		생년월일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 × × ×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휴대전화)		

2. 계좌정보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 매출대금 입금을 위한 정보입니다. 정확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3. 카드단말기 정보

카드단말기 VAN사명		단말기 관리회사 연락처	
-------------	--	-----------------	--

※ 변경 및 해지 사유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변경)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같은 법 제17조제1항(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 및 매출대금 지급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별지 제4호서식]

평창 - 호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 지정서

○ 상 호 :

○ 소 개 지 :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 . .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 업체
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가맹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신규사업 추진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및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4만원”의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음.
-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신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므로 예산 증액이 수반되어야 함.
- 연도별 대상자 수(2024. 8. 인구 통계 기준 향후 5년간 추정치)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대상자 수	1,574명	1,533명	1,423명	1,387명	1,311명

-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카드발급비는 개당 3,000원, 전산시스템 운영비는 카드사용액의 1.7%로 추계함.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총 1,771,393천원, 매년 320,520천원 이상의 비용 발생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총계
바우처 지원금	377,760	367,920	341,520	332,880	314,640	1,734,720
카드발급비	4,722	729	606	594	531	7,182
전산시스템 운영비	6,422	6,255	5,806	5,659	5,349	29,491
연간 소계	388,904	374,904	347,932	339,133	320,520	1,771,393

※ 카드발급 비용은 1차년도 1,574장 발급이후 2차년도부터 신규대상자(13세 청소년)의 발급 비용만 발생

다. 재원조달 방안

- 평창군 자체수입(군비)으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연락처	(033) 330 - 20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지방세수입							
세 출		388,904	374,094	347,932	339,133	320,520	1,771,393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301-03)		388,904	374,094	347,932	339,133	320,520	1,771,393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88,904	374,094	347,932	339,133	320,520	1,771,393
	지방세	388,904	374,094	347,932	339,133	320,520	1,771,39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